「시설물 안전관리法」 추진

— 준공 후 관리명세제출 의무화, 50억 미만 工事 「책임감리」 실시

黨政 不實공사방지 종합대책마련

정부와 民自黨은 주요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한편 건설부 산하에 「시설안전관리공단(가칭)」을 설립, 시설물관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 교량을 비롯한 특수구조물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공업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을 현행 1백억원에서 5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량과 터널 등 주요공종은 50억원 미만 공사라도 책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성수대교 상판붕괴사고와 관련한 黨政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黨政은 이 종합대책에서 그동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黨政은 이 법에 설계시 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장비, 인력 및 연차별 소요경비 등을 산정해 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교량, 터널 등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보수기간(10년) 만료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부실여부가 밝혀지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부대입찰제 확대실시 및 정부노임단가 폐지방안 등이 마련됐다.

〈매일경제신문 10월 26일자〉

「안전점검통제회의」 발족

— 民官합동으로 행정기관별 대책반도 운영

정부는 27일 대형사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발족했다.

회의는 월례회의를 통해 ▲ 시설물—교량 및 대형건축물, 댐 ▲ 교통—철도 및 지하철, 항만, 공항 ▲ 가스시설 및 광산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부처 및 시·도 등 일선행정기관의 안전점검활동을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인력·장비·예산지원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회의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내무·국방·상공자원·건설·교통·공보처장관, 서울시장, 총리행정조정실장 등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회의실무기구로 총리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고 그 안에 기획총괄, 시설, 교통, 가스·광산 등 4개반별로 20명씩의 안전관리전문공무원(국장급) 및 15명 이내의 비상임민간자문위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한 건설 교통부 등 일선부처와 시·도에 각각 차관 및 시·도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행정기관별 안전점검대책반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안전점검통제회의의 민간위원은 다음과 같다. ▲ 교량—張東— 한양대교수 ▲ 지하철—崔相烈 쌍용건설전무 ▲ 철도—朴昌浩 서울대교수 ▲ 건

축－曺鐵鎬 건국대교수 ▲ 가스－康宗權 경희대교수 ▲ 댐－申東培 (주)해강부사장 ▲ 사회단체－徐京錫 경실련사무총장, 姜汶奎 YMCA 총무, 李世中 대한변협회장

〈한국일보 10월 28일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추진

－ 교량 · 터널 등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당정협의, 부실방지, 안전대책 마련

정부는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 대상을 현행 1백억원에서 5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책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25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金鍾泌 민자당대표, 李榮德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그동안 교량 및 터널 등에 대한 설계 · 시공관리는 이뤄져 왔으나 시설물의 유지 · 보수 등 사후관리체계는 없었던 점을 감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사후관리를 전담한 「시설안전관리공단(가칭)」을 건설부 산하에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사고 발생시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관계법에 의거 처벌하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아래 설계잘못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실설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부실감리자에 대해서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처벌규정을 부실설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대형인명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부처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112, 119, 129 등 응급신고 및 구호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신문 10월 31일자〉

공사비 20억 미만 소규모 建設현장 安全지도 月 1회 받아야

－ 노동장관 지정 전문기관 통해, 20억～100억 규모는 분기마다 실시－노동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들 현장에 대한 안전관련 기술지도 및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중소형 건설현장 사고예방대책」을 마련, 공사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현장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전문안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의 현장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시정이 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부당이득의 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자가 회수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비에 대한 시공회사 사용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강화된 내용 가운데는 공사를 계약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안전관리비도 조정토록 하는 한편 시공회사는 공사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관리비에 대한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해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안전관리비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해 안전관리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와는 거리가 먼 현장경비, 청소원, 급수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불법 사용해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매일경제신문 10월 31일자〉

건설재해 감소 위해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대폭강화

— 노동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공포 —

노동부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시공회사가 사용치 않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전액 회수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안전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현재는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5종으로 확대하여 일반건설공사는 갑·을로 나누고 준설·포장·조경·전기·전기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공사종류를 확대하면서 플랜트 건설 등 위험요인이 큰 일반건설공사(을)은 계상비율을 높인 반면 조경공사 등 위험요인이 비교적 적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계상비율을 낮추어 공사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도록 조정했다. 〈표 1 참조〉

공사를 계약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안전관리비도 조정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금액을 발주자가 총 계약금액에서 감액(회수)토록 함으로써 그간 일부 시공회사가 안전관리비를 부당이득의 한 수단으로 취급하던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안전관리비의 사용 범위가 명확치 않아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와는 거리가 먼 현장경비, 청소원, 급수시설 등에 불법사용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의

〈표 1〉 개정된 공사종류·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비율

대상액 /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5(%)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주 1. 특수건설공사,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해서 안전관리비를 구한다.

사용내역을 확정하고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가 진척되는 공정률에 따라 안전관리비도 같은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표 2 참조〉

〈표 2〉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최소 사용 기준

공정률	20%	40%	60%	80%	100%
사용기준	20%이상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의무화 방침에 따라 95년 3월 1일부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소규모현장은 월1회 이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중규모현장은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기술지도에 필요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 중 일부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추진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의 단순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기본비용으로 하여 요율로 계상하고 현장특성에 따른 안전시설비는 공사내역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종전 방법을 개선,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를 합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일정요율만 곱하면 안전관리비가 계산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상방법을 단순화시키되 만일 안전시설비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외에 별도로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설계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비의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때, 그리고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 등 각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여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보건정보 11월 1일자〉

瑕疵책임기간 安全診斷 의무화

—黨政, 시설물관리 特別法 제정키로—

전담 公團 설립—維持管理業 신설

앞으로 시설물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하자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하자책임기간 만료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할 유지관리업이 신설된다.

金佑錫 건설부장관은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黨政會議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관한 特別法案을 보고했다.

金장관이 보고한 特別法案에 따르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종류를 위험도,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분류하고 관리주체를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하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유지관리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고 유지관리업을 등록코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建設部장관에게 등록토록 하며 1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施設安全管理公團을 설립토록 했다.

特別法案은 또 시설물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까지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 하자담보책임을 해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시설물은 시공자가 유지관리토록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시설물의 시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부실장비를 위해 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해를 초래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간건설 11월 10일자〉

산재예방특별사업, 향후 3년간 3천억원 투자된다

—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에 집중투자, 오는 98년 재해율 0.7%대 목표—

산업현장의 근원적인 안전보건 확보와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감소를 위해 추진되는 산재예방특별사업에 오는 97년까지 향후 3년간 3천억원이 투자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그동안 산재예방사업이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점 추진되어 왔으나 설비개선 등 하드웨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재해율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동안 3천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시켜 오는 98년에는 재해율을 0.7%대로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산재예방특별사업은 영세사업장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 재해와 직업병 발생률이 높은 특수업종 지원,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선진화 추진 등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 50인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설비 개선지원 ▲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방호장치 설치지원 ▲ 안전설비 구입자금 융자지원 등의 영세사업장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에 1천5백억원이 투자되며 ▲ 건설현장 안전설비 리스제도 도입 ▲ 화학공장 위험관리센터 운영 ▲ 유해물질취급 영세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등의 재해와 직업병 발생률이 높은 특수업종 지원에 1천92억원이 투자된다.

또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기술 지원 ▲ 이동건설안전교육센터 운영 ▲ 물질별 안전·보건 자료제도 도입 ▲ 안전보건 종합통신 서비스체제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선진화 추진에 4백8억원이 투자된다.

금번 10개분야 투자대상 중 특히 재해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불비한 안전보건시설에 집중투자를 함에 따라 근원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통한 고질적인 재래형 반복재해의 감소 및 직업병 예방이 기대된다. 특히 여타 산업에 비해 재해강도율이 높은 건설분야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위한 순회안전교육과 규격화된 안전시설재의 사용지원 등을 통한 건설재해 감소도 기대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2%대이던 80년 중반 이후 매년 10%를 상회하는 재해감소율을 보여왔으나 최근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금번 산재예방특별사업의 추진으로 재해감소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예방특별사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가 완료된 후에도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공단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보건정보 11월 15일자〉

건설市場 2천년 50兆 돌파

— 民間 부문 SOC 참여 힘입어 급성장, 2천 5년엔 72조규모

중앙대 金修三교수 연구발표

오는 2000년에는 국내 건설시장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고 2005년이면 무려 7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증가 등으로 민간 건설시장이 공공 발주

물량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中央大 金修三 교수가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건설경영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건설시장 규모가 이같은 추세로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金교수는 이날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와 건설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92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92년 32조 5천억원에, 2005년에는 71조8천억원으로 1백20.7%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중 연도별 건설시장규모 전망은 △ 96년 43조2천억원 △ 98년 49조1천억원 △ 2001년 58조1천억원 등이다.

특히 오는 2005년까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증가 등으로 민간부문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져 이 기간동안 1백35.5%가 증가한 45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도의 공공부문 공공공사 추정액은 92년보다 99.5%가 증가한 26조6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민간부문(19조1천억원)과 공공부문(13조3천억원)의 시장점유비율이 59대 41에서 오는 2005년에는 63대 37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토목은 92년 10조8천억원에서 2005년에는 98.2%가 늘어난 2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축분야는 21조6천억원에서 1백32%가 늘어난 50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金교수는 한편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시장규모는 92년 13조6천억원에서 2005년에는 1백19% 늘어난 29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국내건설시장규모 전망

(단위 : 십억원)

	92년	96년	98년	2001년	2005년
토목	10,867	15,143	17,205	17,455	21,542
건축	21,664	28,123	31,952	40,728	50,264
계	32,531	43,267	49,157	58,183	71,806
공공	13,353	18,280	20,425	22,284	26,640
민간	19,179	24,987	28,732	35,899	45,166
계	32,531	43,267	49,157	58,183	71,806

※ 92년 불변가격 기준

연도별 1백억원 이상 공사 추정치는 △ 96년 17조6천억원 △ 98년 20조원 △ 2001년 24조1천억원 등이다.

〈매일경제신문 11월 16일자〉

公共시설 安全관련예산 대폭 增額

— 企劃院, 내년 1.2兆원 策定…올보다 57% 늘려—

鐵道 5천743억—道路·河川 5천615억

50억 미만 特殊工程 감리비 追加 지원

정부는 公共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내년중 安全관련예산액을 올보다 57.8% 늘어난 총1조2천81억원으로 편성·운용키로 했다.

18일 經濟企劃院이 마련한 '安全관련 예산 및 지원방향'에 따르면 鐵道, 空港, 道路 등 교통관련시설의 안전비용을 올해의 7천782억원보다 4천494억원이 많은 1조2천281억원으로 책정, 設計에서 施工, 유지관리에 이르는 부실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企劃院은 지난달 22일 이후 각 부처별로 시행한 긴급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금년 시행분 217억원을 포함, 모두 2천445억원의 예산을 추가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鐵道시설 안전관련예산이 올해의 3천386억원보다 69.6%늘어난 5천7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위험제방보수 등 道路 및 河川부문에서도 39.8% 증가한 5천615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航空부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시설 안전예산으로 올해보다 193.3%가 늘어난 399억원이 계상됐으며 港灣부문예산도 524억원으로 금년보다 281억원 증액됐다.

企劃院 관계자는 安全부문 추가예산 반영조치와 관련, 올부터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 강화를 위해 監理費를 금년대비 50.1% 늘렸으며 추가소요예산중 긴급한 改·補修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 安全關聯豫算 現況

(단위 : 억원, %)

	'94 豫算	'95 豫算(案)	증(△)감	증 감 률
— 道路 및 河川	4,017	4,540	523	13.0
• 노후교량 개축	1,584	1,766	182	
• 국도 유지보수	2,186	2,379	193	
• 위험제방 보수 등	247	395	148	
— 鐵 道	3,386	4,622	1,236	36.5
• 노후차량 대체	255	1,000	745	
• 노후시설 개량	1,568	1,795	227	
• 시설 유지보수 등	1,563	1,827	264	
— 港 灣	243	321	78	32.1
— 空 港	136	353	217	159.6
계	7,782	9,836	2,054	26.4

△ 추가요구예산

(단위 : 억원, %)

區 分	'94	'95	備 考
1. 道路 및 河川	186	1,075	
— 노후교량 개보수	126	769	— 改築 : 527개, 補修 : 590개
— 위험제방 보수	—	55	— 10개소 긴급보수
— 안전진단 등	60	251	— 과적차량 단속, 3개 특수교량 위탁관리
2. 鐵道	13	1,121	
— 노후차량 교체	—	266	— 차량 대체 : 146량
— 노후시설 개량	—	653	— 레일교체 : 150km, 교량—터널 개축 : 63개소
— 시설 유지보수 등	13	202	— 안전설비 유지보수
3. 港灣	18	203	— 방파제, 물양장 보수 등
4. 空港	—	46	— 무선표지소 개축, 장애가옥 이전
計	217	2,445	

서는 내년도 新規사업 예산을 조정해 확보하고 통상적인 시설물 개·보수 예산은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工事費 50억원 미만 사업 중 特殊工程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감리 시행을 위해 관련비용을 추가해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간건설 11월 19일자〉

新都市건설현장 安全点檢 강화

—건설부, 施設物유지관리要領 마련—

骨造공사 등 完璧시공 철저 확인

橋脚기초부터 工程·品質管理에 만전

建設部는 28일 신도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시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신도시건설현장안전관리 및 시설물유지관리요령을 마련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기초공사시에는 우기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펌프를 설치하고 인접대지의 붕괴, 지하수위변동에 따른 인접건물의 피해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상수도관, 담장, 옹벽, 석축 등은 보강 및 이설조치 후 시공토록 하고 있다.

또 골조공사시에는 비계, 비계발판, 동바리, 낙

하물 방지망 등 가설물의 적정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거푸집존치기간준수 및 해체작업구역에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하며 지하주차장은 하부지지대 등을 입주 직전까지 계속 존치토록 하는 한편 지상에 집중하중이 없도록 중기사용 및 건자재설치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감공사시에는 주변 접근자통제와 사용시설 등에 대한 확인점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낙하물 방지망 등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입주후에는 입주민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곤돌라 등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 요령은 또 건설중기안전대책으로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점검을 비롯, 기계의 청소, 주유 및 마모성기계의 이상유무, 기계의 성능에 따른 작업방법과 계획의 안전성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교량의 교대 및 교각부분에 대한 변형우려가 없도록 기초부터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석축, 옹벽, 방호책 등의 표면상태 균열발생 및 기초가 변형돼 전도가 우려되는 곳을 점검보수하며 도로보수공사시에는 야간통행차량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경고등 및 위험표시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미숙련기능공, PC조립기능공 및 중기사용기능공에 대해 안전관리, 시공방법, 자재운반, 안전장비착용 등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공사 전문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개최 및 정기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일간건설 11월 29일자〉

제2회 산업안전보건대상 시상

每日經濟新聞社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2회 산업안전보건대상 시상식이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상업체와 재해예방단체, 기업체의 안전보건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제조업 중화학부문에서는 럭키(대표 成在甲) 여천공장, 三星코닝(대표 金益明) 수원공장이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경공업부문에서는 現代電子(대표 金奎瑢) 이천공장이 영예의 大賞을 차지했다.

건설업부문에서는 大林産業(대표 李正國)과 現代産業開發(대표 沈鉉榮)이 공동으로 경쟁업체를 제치고 산업안전보건대상을 수상했다.

또 한진건설의 朴宰永전무이사는 그동안 안전보건활동에 기여해온 공로로 대상 공로상을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12월 1일자〉

"공사品質·安全관리 만전을

—건설부, 冬節期유의사항 傘下기관 시달—

寒中 '콘' 구조물 시공 要領 준수

建設部는 최근 冬節期에 대비, 콘크리트 및 아스콘양생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建設部가 시달한 冬節期 건설공사 유의사항에 따르면 土工의 경우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에 유의하고 마무리 횡단구배를 4% 이상 유지하며 성토작업시 표면이 얼었거나 강우 강설로 표면이 젖었을 때에는 이를 제거 후 다음층을 시공토록 했다.

콘크리트 구조물공은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면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표준시방서의 寒中콘크리트 시공요령에 따라 시공하며 冬害를 입은 콘크리트는 완전히 제거한 뒤 시공토록 했다.

양생시에는 콘크리트온도를 10℃ 이상으로 하고 조기강도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5℃이상 유지하며 콘크리트에 온풍기 등으로 열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스콘은 5℃ 이하일 때 가급적 포설작업을 중지하고 전압이나 완성면 작업시 과다한 실수로 인해 동결융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첫 포설시에는 아스팔트 휘니셔의 스크리트플레이트와 템퍼 등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포설 후 바로 다짐을 하도록 했다.

거푸집으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동바리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용해에 의해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며 용접은 5℃ 이하일 때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되 40℃ 이상 예열을 할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간건설 12월 10일자〉

건설현장 重大災害 크게 늘어

— 9월말 현재 309件 작년比 13.6%

올들어 9월말까지 建設現場에서 발생한 重大災害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韓國産業安全公團이 마련한 94년 건설분야 중대재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309건이 발생하고 3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작년 같은 기간의 264건 발생, 300명이 사망한 데 비해 건수로는 13.6%, 사망자수로는 20%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의 월별분포를 보면 조사대상 309 가운데 6·7·8월에 각각 40, 50, 48건을 기록했고 5월 34건, 9월 30건, 4월 29건 등의 순이다.

산업안전공단은 이같이 6·7·8월의 중대재해가 급증한 것은 극심했던 무더위의 영향이었다며 올해 중대재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이 기간의 재해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안전공단은 또 공사금액별로 20억 이상 50억 미만 규모공사에서 가장 많은 179건을 기록하는 동시에 지난해 같은 규모에서 112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무려 60%가 증가했으며 20억 미만 공사에서도 지난해 92건보다 53%가 증가한 14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난해 35건에서 17건으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공사는 77건에서 71건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측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소규모현장에 대한 안전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업안전공단은 공정률이 81% 이상인 마무리단계에서 가장 많은 77건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공정률 20% 미만의 초기단계에서 7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건설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도 1만1천117평을 개발하며 상업시설용지는 중심상업용지로 4만4천165평, 근린상업용지로 9천217평을 각각 조성키로 했다.

土開工은 공공시설용지 68만9천266평 가운데 도로로 36만460평을 비롯, △ 주차장 8천409평(노외 10개소) △ 공원 11만2천476평(근린공원9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 학교용지 6만2천173평(유치원 6, 국민학교 7, 중학교 4, 고등학교 4개교) △ 공용의 청사용지 1만8천14평(우체국 등 8개소) △ 녹지 7만6천856평 △ 열공급설비용지 1만3천250평(열병합발전소) △ 가스공급설립 4천568평 △ 종교시설용지 2천704평(9개소) △ 통신시설용지 1천815평(1개소)을 각각 조성키로 했다.

〈일간건설 12월 5일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노동부—

건설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기준이 근로

자수에서 공사금액으로 변경되고 1백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2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확대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기준에 있어 종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했던 것을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관련, 1백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 외에 이공계 전문대학과 공업계 고교졸업자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특성상 공사 초기와 종료 직전에는 공사금액 및 출연근로자수가 적고 위험도도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 전체 공사기간을 1백을 기준으로 공사시작과 종료를 전후해 각각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1인만 선임해도 되도록 했다.

〈산업안전신문 12월 5일자〉

안전시설 미비 건설현장 제재조치

— 26개현장 전면 · 부분 작업중지 명령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안전점검 결과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26개 건설현장에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동절기 대형사고에 대비, 지난달 전국 1천1백4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시공중인 (주)보성건설 포항철강관리공단청사 신축공사 등 8개 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신성종합건설이 시공중인 남강댐 이설도로 축조공사 등 98개 현장에는 부분작업중지를, 안전시설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세광종합건설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신축현장에는 안전진단명령을 각각 내렸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중인 타워크레인 등 총2백20대의 위험기계 · 기구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점검대상현장에 총 5천3백2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안전관리비를 타목적으로 사용한 (주)경동건설 울산 한덕APT 현장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치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전면작업중지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안전신문 12월 5일자〉